

< 임상시험 연구간접비 부과 관련 정책 >

- 1) 연구비에 있어 간접비란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 중 직접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가리킵니다. 따라서 연구간접비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이지만 그 특성 상 해당 연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려운 비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.
- 2) 그러한 비용의 예로는 도서관, 연구시설 운영, 관리비, 공과금, 일반 행정관리비, 설비투자비 뿐 아니라 건물이나 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들 수 있습니다.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시설에 투자하고, 유지, 관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추가적인 비용청구 혹은 연구기관의 이익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.
- 3) 상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용을 특정 연구와 연관 지어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간접연구비는 대개 직접연구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게 됩니다. 이러한 산정 방식은 동일한 이유로 대한민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채택된 방식입니다. 또한 연구 간접비의 요율 혹은 산정방법은 각 연구기관의 규모나 운영조직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4) 본 원은 연구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 연구기관으로서의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계산하고, 산정된 간접비 요율을 *공개하여* 모든 Commercial Sponsor에게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할 것이며,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간접비가 합리적인 행정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.